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기간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이효정 (044-202-3191)
		담당자	사무관	오성남 (044-202-3194)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사업기간) 1차('18.5~'20.5), 2차('20.6~'21.9.29), 3차('21.9.30~)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시범수가) 시범사업 내 신규 요양급여인 장애인건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방문료로 구성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주요 개선사항(3단계 → 4단계)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
 -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방문 횟수(중증 24회, 경증 4회) 차등하여 산정

기존			개선(안)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관리	모든 중증장애인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연1회)	일반건강관리	장애인 (중증+경증)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연1회)
주장애 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간점검(필요시 1회) 교육상담(연 8회)	주장애 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중간점검(필요시 1회) 교육상담(연 8회)
통합관리	중증장애인	환자관리(연 12회) 방문서비스(연 18회)	통합관리		환자관리(연 12회) 방문서비스 - (중증 연 24회) -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진료를 고려한 방문수가 개선 및 방문서비스(방문진료+간호) 제공 강화를 위한 산정 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 (주치의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주치의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까지 확대

□ **사업개요**

- (목적)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보장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현황) 병원급 이상 총 30개소 지정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모규모	85	10	20	11	16	20	8
신청기관	52	9	13	7	6	8	9
지정기관	30	8	6	0	3	5	8

□ **지원내용**

-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지원(개소당 117,000,000원)
 - * ('22년) 5개 의료기관 선정 285,000,000원 → ('23년) 8개 의료기관 선정 469,000,000원
- 지정기준 충족 후 운영 개시된 기관에 대해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원(중증장애인 1인당 50,350원 검진가산비용수가 추가지원)
 - * 건강검진 수가 확대 : ('21년) 27,760원 → ('22년) 37,770원 → ('23년) 50,350원

□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에 따른 당연지정 대상 현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대상 현황>

구분	개소수	국가검진기관 지정 여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미지정	기지정	당연지정 대상	당여지정 대상 중 BF 인증기관
합계	223	99	124	19	80	2
국립병원	27	3	24	1	2	1
지자체병원	102	15	87	4	11	1
지방의료원	38	36	2	13	23	
특수법인	56	45	11	1	44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시 기반 확대 효과>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현재 지정 현황	2	4		2	1	1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	16	8	4	5	5	4		1	12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현재 지정 현황	1	1	2		4	3	5	2	30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	10	3	4	7	6	10	11	4	110

* 울산을 제외하고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